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근로자 파견용역 계약 시행 보고

1. 관련 근거

가.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
나.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 지침[사장방침 제692호(2013.11.26.)]

다. 새문안동네 조성 추진반 구성 및 운영(안)[사장방침 제481호(2015.06.09.)]

2. 위와 관련하여 ‘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’ 관련 사무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보조원 파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가. 용역명 :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근로자 파견 용역

나. 계약업체 : (주)제이앤피21

다. 계약방법 : 회계규정 제207조에 의거 수의계약

라. 파견기간 : 2016.07.04. ~ 2016.10.03. (3개월)

※ 기존 파견계약 종료에 따른 기존 파견근로자 고용 승계

(해당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 : 2016.01.04. ~ 2016.10.03. (9개월))

※ 파견기간 종료 후, 인력 추가 필요시 업무수행도 등을 평가하여 연장계약 검토

마. 사용인원 : 1명

바. 설계금액 : 6,783,480원(부가세 포함) = 월 금액 2,261,160원 × 3개월

※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

사. 예산과목 : 대행.도시.건축.기타.기타제경비

아. 행정사항

○ 위 내용으로 계약부에 계약 체결 요청

○ 파견근로자 퇴직금 청구 발생 시 계약금액 변경을 통한 정산지급

-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

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

- 법무팀-624호(2013.02.20.) “파견근로자의 파견업체 변경과 퇴직금 청구권 발생여부” 에 의거 퇴직금 지급

○ 추후 계약연장 추진 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6조의2에 따른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

- 붙임 1. 파견근로자 사용 및 관리지침
 2. 새문안동네 조성 추진반 구성 및 운영(안)
 3. 파견근로자 사용계획서
 4. 수의계약사유서
 5. 설계금액 산출내역서
 6. 견적서
 7. 타견적서
 8. 사업자등록증
 9.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. 끝.

부 원	장재욱 파트장	김광준 주거재생사업부장	조진래 근린재생사업처장	강홍극
재생사업기획처장	대결 06/29 조준배 도시재생본부장	전결 휴가		
협조자 인사노무부장	이상석 예산자금부장	조한보 경영관리부장	차승민	

시행 주거재생사업부-1729 (2016.06.29) 접수 ()
 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147호
 우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(개포동) / <http://www.i-sh.co.kr>
 전화 02)3410-7370 전송 02)3410-7373 / jaewook_jang@i-sh.co.kr / 비공개(5)